

#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5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12월 19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안 제2조 신설에 따라 후단의 조 번호체계가 변경되었음에도, [별표 1]과 [별표 2]의 제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 번호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어 변경된 조 번호 체계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[별표 1]과 [별표 2]의 제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 번호를 수정함.(안 [별표 1], [별표 2]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[별표 1]의 제목 중 “(제2조 관련)”을 “(제3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안 [별표 2]의 제목 중 “(제4조제2항 관련)”을 “(제5조제2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[별표 1]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(제2조 관련) (이하 생략)	[별표 1]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( <b>제2조 관련</b> ) (이하 현행과 같음)	[별표 1] ----- -----( <b>제3조 관련</b> ) (이하 개정안과 같음)
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조제2항 관련) (이하 생략)	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 <b>제4조제2항 관련</b> ) (이하 현행과 같음)	[별표 2] ----- -----( <b>제5조제2항 관련</b> ) (이하 개정안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협력체계 구축)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3조(중전의 제2조)제1항 중 “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제4항”을 “법 제1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[별표 1]의 제목 중 “(제2조 관련)”을 “(제3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[별표 2]의 제목 중 “(제4조제2항 관련)”을 “(제5조제2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〈<u>신 설</u>〉</p>	<p><u>제2조(협력체계 구축)</u>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<u>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2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)</u>                      ① 「<u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<u>제17조제4항</u>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~ ③ (생략)</p>	<p><u>제3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)</u>                      ① <u>법 제17조제4항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3조(불 피움 등의 신고)</u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(생략)</p>	<p><u>제4조(불 피움 등의 신고)</u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</u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③ (생략)</p> <p>[별표 1]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(<u>제2조 관련</u>)                      (이하 생략)</p> <p>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<u>제4조 제2항 관련</u>)                      (이하 생략)</p>	<p><u>제5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</u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1]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(<u>제3조 관련</u>)                     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2] -----(<u>제5조 제2항 관련</u>)                     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